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7
----------	-----

2023. 6. 1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이태훈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2일
 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.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태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만들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하며, 이를 통해 우리 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(안 제40조의3)
 - 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제28호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익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－ 안 제4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하는 것임.
- 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수익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준을 “한국표준분류상의 제조업”으로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수익매각을 가능하게 하며, 이를 통해 우리 도의 투자유지를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다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3(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)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